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453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7일
발 의 자 : 강동길, 권수정, 김인호,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박기재, 박상구, 서윤기, 송아량, 양민규, 이영실,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19명)

1. 제안이유

-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이나 예비범죄자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가부에 ‘가출’이라는 표현을 ‘가정 밖’으로 변경을 권고함.
- 이에 따라 용어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지 약 4년만에 여가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가출 청소년’이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함
- 이를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국자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을 향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용어 사용을 재정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청소년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제6조제1항,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으로 한다.

제4조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가출청소년”을 각각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 가출”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으로,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출”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가출청소년”을 각각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청소년 가출”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으로,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5호 중 “가출청소년”을 각각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9조 중 “청소년의 가출”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으로,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 따라 <u>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u>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가정 밖 청소년</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가출청소년</u>"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p>	<p>2. "<u>가정 밖 청소년</u>"----- ----- ----- -----.</p>
<p>3. (생략)</p>	<p>3. (현행과 같음)</p>
<p>4. "<u>청소년쉼터</u>"란 <u>가출청소년</u>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p>	<p>4. ----- <u>가정 밖 청소년</u>----- ----- ----- -----</p>

현행	개정안
<p>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 ----- -----.</p>
<p>5. 6. (생략)</p>	<p>5. 6.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u>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밖</u> ----- -----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u></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가정밖 청소년</u>----- ----- -----.</p>
<p>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u>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 ----- <u>가정 밖 청소년</u>----- ----- -----.</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 -----.</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u></p>	<p>2. <u>가정 밖 청소년</u>----- -----</p>

현행	개정안
<p>3.·4. (생략)</p> <p>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u>가출청소년</u>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u>청소년</u> <u>가출</u> 예방 및 <u>가출청소년</u>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가출</u>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u>가출청소년</u>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u>가출청소년</u>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4. <u>가출청소년</u>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5. <u>가출청소년</u>의 보호 6. <u>가출청소년</u>의 교육문화·복지 지원 7. <u>가출청소년</u> 야간생활지도 지원 	<p>3.·4. (현행과 같음)</p> <p>③ ----- ----- <u>가정 밖 청소년</u> ----- ----- ----- ----- -----.</p> <p>제6조(지원사업) ① ----- <u>가정 밖</u> <u>청소년의 발생</u> --- <u>가정 밖 청소년의</u>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가정 밖 청소년 발생</u> ----- ----- 2. <u>가정 밖 청소년</u>----- ----- 3. <u>가정 밖 청소년</u> ----- ----- 4. <u>가정 밖 청소년</u>----- ----- 5. <u>가정 밖 청소년</u>--- 6. <u>가정 밖 청소년</u>----- --- 7. <u>가정 밖 청소년</u> -----

현행	개정안
<p>8. (생략)</p> <p>9. 그 밖에 <u>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생략)</p> <p>제8조(청소년거점센터 설치·운영)</p> <p>① (생략)</p> <p>②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u>가출청소년</u>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p> <p>2. ~ 4. (생략)</p> <p>5. <u>가출청소년</u>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정책적 건의</p> <p>6. (생략)</p> <p>③ (생략)</p> <p>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u>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u></p>	<p>8. (현행과 같음)</p> <p>9. ---<u>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u>--- ---<u>가정 밖 청소년</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청소년거점센터 설치·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가정 밖 청소년</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가정 밖 청소년</u>----- -----</p> <p>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 <u>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u> ----- ----- <u>가정 밖 청소년</u> ----- ----- -----.</p>